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2. 3. 6.(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4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30차 전원회의(2009.7.9), 제2011-17차 전원회의(2011.3.21)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 보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1(서면보고)제1항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안건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케이엠에이치 - (2012-10(서)-048)

-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제5항에 의거, (주)케이엠에이치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등록내용 >

신청법인	채널명	방송분야 (방송유형)	대표자	편성 책임자	최다액출자자 (지분율)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주)케이엠에이치	우리가족 행복 멘토	오락 (데이터)	한찬수	김진원	최상주 외 7명 (37.28%)	63.1억원 (145.7억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CCTV - (2012-10(서)-04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IPTV를 통해 외국 방송 재송신을 하고자 하는 외국방송 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승인내용 >

외국방송 사업자명	방송채널명	국적	방송분야	방송언어
CCTV	CCTV-4	중국	보도	중국어

< 승인조건 >

- ① 방송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3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내 지사, 사무소, 대리인 또는 채널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승인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국내 송출현황 자료,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 자료, 기여계획서상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재송신 승인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을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승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 방송내용이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
 -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방송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다. 800/900MHz대역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 (2012-10(서)-050)

- '11.8월 실시된 경매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12.7월 KT에 할당예정인 800MHz대역에 LTE 기술방식을 도입하고, '11.7월 할당된 800/900MHz대역의 단말기간 보호기준 완화를 위해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① '12.7월 KT에 할당예정인 800MHz대역에 LTE용 장비의 제조·사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 규격을 국내기준에 반영
- ② '11.7월 KT가 할당받은 900MHz대역이 LG U+가 할당받은 800MHz대역에 주는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기준을 -50dBm에서 -30dBm으로 완화

③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o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o 주요 내용

- ①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추가(제28조제1항)
 - 종전의 재난방송에서 민방위 사태를 추가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으로 개정
 - 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제2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②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 포함(제28조1항)
 - 종전의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를 재난방송 대상사업자로 추가함
- ③ 재난방송에 적용할 과태료를 민방위경보방송에도 부과하도록 개정(제31조제1항 별표)

- o 향후일정

- '12. 3월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12. 4월 : 방송통신위원회 안건상정
- '12. 6월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 '12. 7월 : 공포

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o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전화를 추가하고,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o 주요 내용

①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방법 추가(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 디지털방송 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지원 신청 방법에 '전화'를 추가

현 행	개정안
직접방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홈페이지 등	직접방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홈페이지 등, 전화 등

②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 처리 절차 마련 (안 제7조2)

-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시 자가부담금 납입 기한을 안내하고 미납입시 추가 납입 기한 안내, 신청 철회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
- (납입기간) 정부지원 대상 확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가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되, 이 기간 중 미납입시 최소 5일 이상의 추가납입기회를 1회 이상 제공(종료일 2개월 이내 신청자의 경우 생략 가능)
- (지원내용 변경 또는 신청 철회) 방통위가 지정하여 통보한 추가납입일까지 자가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디지털 컨버터(무상)로 변경하여 지원하거나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디지털TV 구매보조를 신청한 경우 정부지원 대상 확인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자가 부담금 납입·자가부담금 미납입시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1회 이상 추가납입기회 제공·추가납입일까지 미납시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디지털 컨버터로 변경하여 지원하거나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o 향후일정

- 입안예고 및 부처협의 : '12. 3.
- 규제심사 : '12. 3. ~ '12. 4.
- 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 : '12. 4.